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휴스콘 수필아파트 | 입주자 모집공고

■ 울산광역시는 비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재당첨 제한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단, 분양권전매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구 분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전용면적 85㎡ 이하	당첨일로부터 5년	없 음
전용면적 85㎡ 초과	당첨일로부터 3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울주군 건축과 35320 호(2008. 07.29)로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160-2번지 외 15필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2층, 지상 11~15층 아파트 5개동 총 20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분 14세대 및 3자녀특별공급분 6세대 포함)**

■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

(단위 : ㎡, 천원)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 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대지비	건축비	총분양가	층별(층)	공급세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주지정일)
				세대별 공급면적			세대별 기타 공용면적	지하 주차장	계약면적						층별	합계	계약시 (10%)	1회 2008. 10. 6	2회 2009. 1. 14	3회 2009. 4. 24	4회 2009. 8. 3	5회 2009. 11. 20	6회 2010. 3. 2	
				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주택	22028-01	2008000664 (01)	113.5065	84.9827	28.5238	113.5065	5.9042	42.0302	161.4409	56.7686	99,485	156,515	256,000	1~2	7	45	25,600	25,600	25,600	25,600	25,600	25,600	25,600	76,800
											99,485	191,715	291,200	3~12	38		29,120	29,120	29,120	29,120	29,120	29,120	29,120	87,360
	22028-02	2008000664 (02)	111.6172	84.9967	26.6205	111.6172	5.9053	42.0371	159.5596	56.7779	99,502	152,298	251,800	1~2	4	29	25,180	25,180	25,180	25,180	25,180	25,180	25,180	75,540
											99,502	186,798	286,300	3~15	25		28,630	28,630	28,630	28,630	28,630	28,630	28,630	85,890
	22028-03	2008000664 (03)	112.5850	84.9763	27.6087	112.5850	5.9038	42.0270	160.5158	56.7643	99,478	154,422	253,900	1~2	4	28	25,390	25,390	25,390	25,390	25,390	25,390	25,390	76,170
											99,478	189,322	288,800	3~15	24		28,880	28,880	28,880	28,880	28,880	28,880	28,880	86,640
	22028-04	2008000664 (04)	111.7234	84.8702	26.8532	111.7234	5.8965	41.9745	159.5944	56.6934	99,354	152,646	252,000	1~2	6	45	25,200	25,200	25,200	25,200	25,200	25,200	25,200	75,600
											99,354	187,246	286,600	3~15	39		28,660	28,660	28,660	28,660	28,660	28,660	28,660	85,980
	22028-05	2008000664 (05)	170.5064	129.1101	41.3963	170.5064	8.9703	63.8544	243.3311	86.2457	151,144	247,856	399,000	1~2	8	58	39,900	39,900	39,900	39,900	39,900	39,900	39,900	119,700
											151,144	303,356	454,500	3~15	50		45,450	45,450	45,450	45,450	45,450	45,450	45,450	136,350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 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 ·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본아파트는 주택법 제21조의 2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의하여 인정기관(한국감정원)의 주택성능등급 평가에서 98점 인정받음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써 무주택세대주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는 제외)

주택형(㎡)	113.5065	111.6172	112.5850	111.7234
대상세대수(세대)	4	3	3	4

– 특별공급 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건설량의 10% 범위 이내 (14세대)

– 특별공급 대상자 구비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 서약서당사 건본주택 비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07.30)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증명서 1통(주택공급신청용) • 인감도장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인정서만 인정함(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등 기타서류 불가)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2. 3자녀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07. 30)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며 만20세 미만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 청약예금 가입여부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이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함. 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중 재당첨제한 기간내에 있는 자는 제외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만법상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이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입신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 입주자 선정방법 : 3자녀특별공급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주택형(㎡)	113.5065	111.6172	112.5850	111.7234	170.5064	계
대상세대수(세대)	1	1	1	1	2	6

– 구비서류 : • 특별공급신청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 분)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3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일반공급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일반공급 : 특별공급을 제외한 순위내청약자에게 공급하는 물량)

– 3자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당첨은 무효처리함

■ 3자녀 특별공급 배점표

배 점 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해당사항	비 고
			기 준	점 수		
계		100				
자녀수 (1)	미성년자녀	40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포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자녀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이만의 자녀
			1자녀	5		
세대구성(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3)		20	세대주나이가 40세 이상 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나이가 35세 이상 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미만	10		
당해시·도 거주기간(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시·도로 본다
			5년이상 ~ 10년미만	15		
			1년이상 ~ 5년미만	10		
			1년미만	5		

※(1)(2)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으로 확인,(3)건교부등 전산검색으로 확인, (4)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으로 확인 ※동점자처리기준 :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자

3. 일반공급

1) 공통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08.07.30)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 만 20세 미만인자 포함)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울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울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차액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당첨자 또는 기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청약 가능함 • 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함

2)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순 위	구 분		신 청 자 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청약접수장소 / 시간	추첨 및 당첨자발표
특별공급 / 3자녀 특별공급			• 위 특별공급 또는 3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비자	울산시	2008.8.3 (일)	당사 견본주택 (10:00~14:00)	– 발표일시 : 2008년8월12일 16:00 – 발표장소 : 당사 견본주택
1순위	공통	가점제 대상자	•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세대에 속한 분		2008.8.4 (월)	– 인터넷 • 국민은행 www.kbstar.com •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www.apt2you.com – KB모바일 Mbank,kbank,Bankon – 시간 08:30 ~ 18:00	– 발표일시 : 2008년 8월 12일 13: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신문공고 : 2008년 8월 12일 울산신문 게재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세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첨제 대상자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전용면적	85㎡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80. 8. 29이전 국민은행 채형자등에 가입하였거나 81. 5. 22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중 청약자격 제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85㎡초과 주택에 한함) • 청약자통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 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 (※ 1순위 청약제한 대상 참조)				
2순위	공통	가점제 대상자	• 2순위 청약자 전원				
		추첨제 대상자	• 해당사항 없음(별도 추첨제 신청자격 없음)				
	전용면적	85㎡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자통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액을 6회이상 불입한 2순위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1순위자중 1순위 청약제한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				
3순위	전주택형		• 상기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2008.8.6 (수)	– 국민은행 인터넷 · 모바일 – 시간 : 08:30 ~ 18:00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개별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 장애우 창구청약 가능 시간 : 09:30 ~ 16:30, 단,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하단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3) 1순위 청약제한 대상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주택소유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4) 청약관련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전용면적 기준)

–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①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자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② 94.8.15이전 청약자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85㎡이하 주택에 제순위 자격으로 청약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① 직은 주택규모로 변경한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② 큰 주택 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1년 미만인 자는 변경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③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신청접수방법

1) 공통

– 공통 : 충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울산광역시 거주자를 청약 순위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 · 2순위

· 1순위자중 가점제 대상자 및 2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점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 · 1순위자중 추첨제 대상자에 한해 추첨제로 청약접수

※ 청약자는 입주자선정방법[가점제 / 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와 청약신청시 입력한 주택소유현황 등에 따라 자동 분류 접수됨

– 3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청약 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해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신청자격 착오기재 등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인터넷 · 모바일 신청접수방법

구 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 1, 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하분 – 3순위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중 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이 있으신 분	
	KB모바일	▶ 국민은행 Mbank, Kbank, Bank on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분 (WIPI폰 기종만 가능)	–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
	KB모바일	▶ SKT : MBank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주택청약 신청 ▶ KTF, LGT : KB뱅킹 접속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주택청약 신청	–

3) 노약자 · 장애우 등 창구 청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배우자포함)	· 주택공급신청서 (1,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국민은행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 (1, 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 (1, 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 등, 초본 등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 (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청약자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

4) 3순위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구 분	전주택형	신청금 납부방법
청약신청금	100만원	신청금액에 해당되는 울산광역시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로 준비하시기 바람

– 환불방법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 이후 2008.8.13 일부터 (평일 : 09:30 ~ 16:30, 토,일요일 : 제외) ▶ 환불장소 :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 · 지점 [단, 청약자 본인의 국민은행 지정계좌로 이체 신청한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이체됨)

▶ 환불시 구비서류

· 본인 ·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접수증 및 영수증, 주민등록증, 청약당시 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제3자 대리 환불시:상기 서류외에 제3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주택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1통, 인감도장, 위임장

▶ 제3순위 당첨자의 청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국민은행 본 · 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 방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 신청자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동 · 호수를 결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일반공급	· 국민은행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 · 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 · 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한 후,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가주자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단, 1순위자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업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으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주택청약부로 공급순수의 20%의 범위 안에서 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자에게 앞의 순번을 부여예정예정액이 같은 자에 대하여는 추첨을 통하여 순번 부여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예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인터넷, ARS, 모바일 당첨확인서비스 이용방법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 (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인터넷	이용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당첨확인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이용기간	▶ 2008. 8. 12 ~ 2008. 8. 21 (10일)	
ARS	이용방법	▶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코드 : 701]	▶ 금융결제원(1369) [서비스코드 : 5#]
	이용기간	▶ 2008. 8. 12 ~ 2008. 8. 21 (10일)	
KB모바일	이용방법	▶ SKT : Mbank 접속 → KB Stark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당첨확인 ▶ KTF, LGT :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당첨확인	
	이용기간	▶ 2008. 8. 12 ~ 2008. 8. 21 (10일)	–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 상	▶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제공일시	▶ 2008. 8. 12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1) 계약체결 기간 및 장소

– 계약기간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당첨자 2008년 08월 18일 ~ 08월 20일(3일간) / 평일 09:30~16:3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국민은행 972401-01-024039 [예금주 :(주)휴스콘건설 외 1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야 함. 계약체결은 견본주택에서 진행함 (무통장 입금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요망)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2)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공 통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 (단, 인터넷, 모바일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금가능한 한 울산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용) 1통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 (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 : 초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와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 ·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서류외에 다음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1통 – 계약자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가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외국인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3)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청약관련 예금 또한 재사용이 불가함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청약가점항목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가점제 1순위 당첨자중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 주택 이상(추첨제 1순위 당첨자는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된 경우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당첨된 자 또는 기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재당첨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첨된 청약관련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

– 예비당첨자 중 최초 동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각각 1순위로 신청하여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1건만 계약체결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에 의거)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